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주요내용

김 영 길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팀 행정사무관)

##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배경

### 가. 수도권 과밀과 일극 중심의 국토구조의 문제점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빠르고도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1, 2>)

이 상태를 방지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치중해오며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1982), 공장총량제(1994), 과밀부담금제(1994) 등 각종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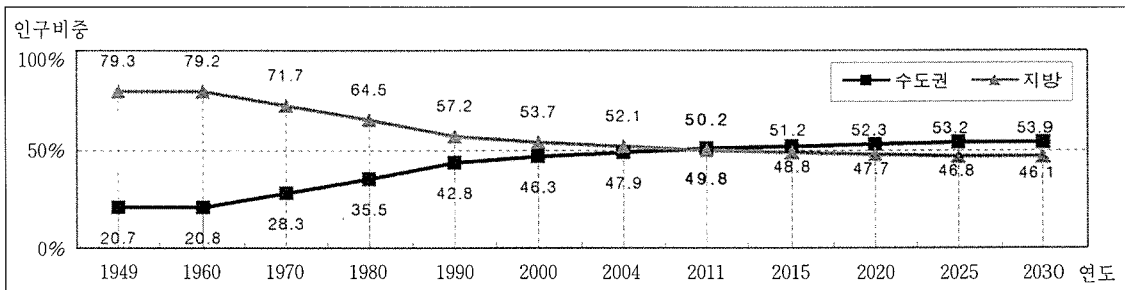
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표-3>)

한편 '소극적 지방육성 정책'으로 지방의 인구와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지방은 새로운 발전동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할 내생적 역량이 소진되어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제도약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정책, 적극적인 지방육성 정책'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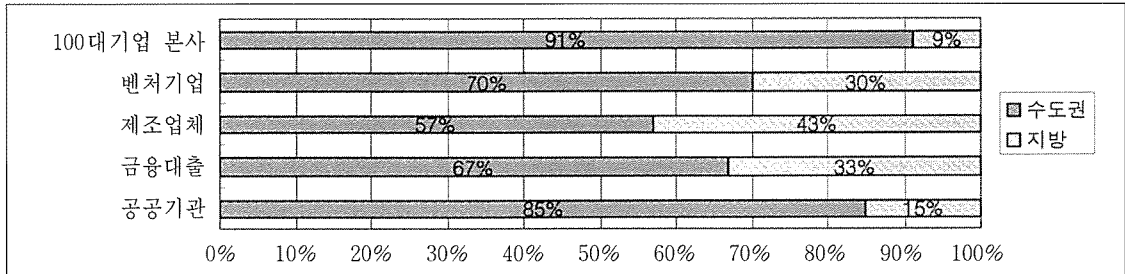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

<표-1>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자료: 통계청 (2005)

〈표-2〉 경제 및 행정기능의 수도권 집중현황



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등 국가재편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주요내용

### 가. 혁신도시의 개념(안 제2조)

#### (1) 혁신도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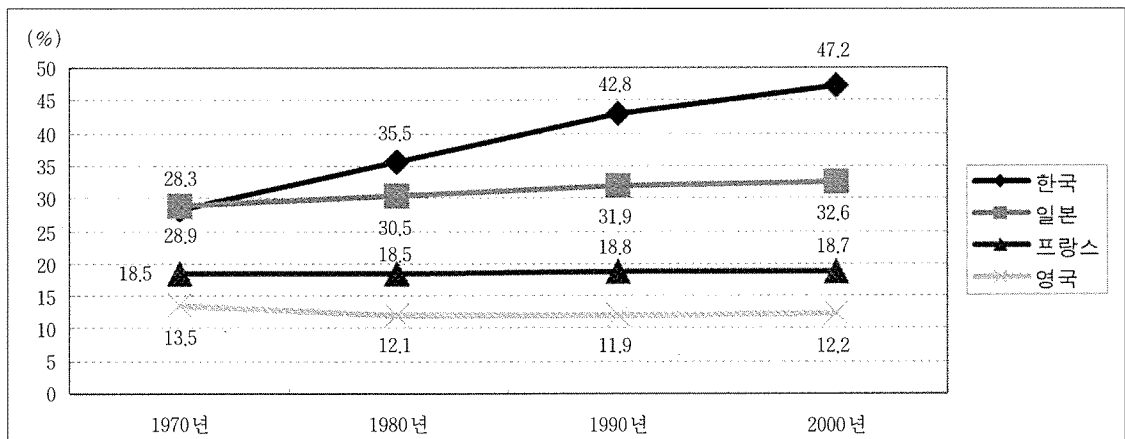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방의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작지만 강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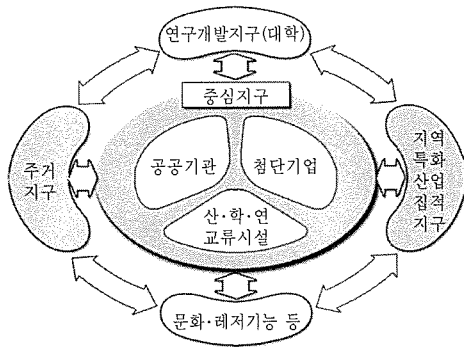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우수한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협력하면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첨단도시

-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쾌적한 생활여건을 갖춘 친환경도시

※ 혁신도시는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의 혁신주체가 상호교류·협력하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

〈표-3〉 수도권 인구비중의 국제비교





〈그림-1〉 혁신도시 공간구조

(2) 신도시 공간구조

〈그림-1〉, 〈표-4〉 참조.

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안 제4조 및 제5조)

(1)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소관행정기관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승인 신청된 이전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함

(2)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건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종전부지의 처리계획 수립 등(안 제8조)

(1) 공공기관의 장은 종전부지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종전부지가 기한내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종전부지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3) 건교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지에 대하여 관할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활용계획을 수립하되,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자체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않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음

라.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용자할 수 있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고, 독신 이전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설비용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청사를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음

(3) 이전에 따른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 이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 등(안 제12조)

(1)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에게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 지급 등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으며

〈표-4〉 혁신도시 해외 유사사례

국명	지명	공공기관 이전관련(기관명)	면적 규모	신도시, 신시가지	
				기능	주거기능 포함여부
스웨덴	웁살라	-	약 100만평	연구개발, 대학, 기업 등	-
	시스타	-	66만평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원기관, 주택	주거지역
프랑스	테크노폴 마르세이유	국립행정학교, 수학, 정보센터, 비평형연구소 등 다수	54만평	기업, 대학, 엔지니어학교, 6개 연구기관, 초등학교, 주거	주택 1,000호
	테크노폴 낭시부라보아	CNRS(국립과학연구소), INRIA, INSERM, INRA, INPL(국립폴리테크닉-로렌) 등	150만평	기술산업지역, 주거지역, 연구지역, 경마장, 호텔, 여가시설 등	주거지역
	테크노폴 메즈	ENSAM(국립예술직업학교) ENIM(기술학교) 등	1단계:54만평 2단계:120만평	산업, 녹지, 연구, 대학, 골프장 등 녹지비중 46.5%	-
	테크노폴 스트라스부르 일키르크	CNRS, INSERM, ENSPS, ESBS 등	51만평	국제항공대학, 국립연구소, 기업 호텔, 골프장 등 입지	-
	리옹 테크노폴 (7개지구로 구성)	Porte des Alpes La Doua	- INSA(국립과학학교), INSERM, CNR 등 대학, 연구소 다수	423.5만평 30만평	대학, 기업, 연구기관, 주거지구 등 대학, 연구소, 기업 리옹과학기술의 40% 차지
핀란드	헬싱키 아비아폴리스	-	1,270만평	연구개발, 기업, 주거, 물류, 문화, 여가, 유치원, 국제학교 등	주거지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	연방정부, 주정부 산하 연구기관 다수	초기 490만평 현재 817만평	연구개발, 기업, 생산, 지원시설 등	-
일본	하리마 테크노폴리스	이화학연구소(하리마) 원자력연구소(관서) 등	605만평	기업, 대학, 연구소, 주거, 초·중등학교, 여가, 골프장 등	50ha, 1,800호, 5,100명 수용
독일	위스타 사이언스파크	훔볼트대학 등 12개 대학과 연구소	127만평	기업, 대학, 연구소, 주거지구, 여가문화(골프장)지구 등	주거지구
스페인	안달루시아	-	51만평	기업, 대학, 연구소, 여가스포츠(골프장)지구 등	-

(2) 이전직원에게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 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안 제13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제한특별법, 지방세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고

(2)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

#### 사.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안 제14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개발·운영의 효과가 혁신도시가 입지하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2) 혁신도시가 입지한 시·군·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일부를 타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로 전출할 수 있으며

(3) 혁신도시가 입지한 시·도는 당해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안 제15조 및 제16조)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함

(2) 회계의 세입은 국가소유 종전부지 매각대금, 사용료 및 임차보증금 회수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고,

(3) 회계의 세출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청사신축비 등에 대한 지원,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예수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용자 등으로 사용

#### 자. 혁신도시의 지구지정(안 제24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지구의 지정 제안이 있는 경우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며,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혁신도시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3) 혁신도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및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봄

#### 차.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안 제28조 및 제29조, 제31조)

##### ● 개발계획 수립

(1)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발계획에는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수용인구,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관계전문가 및 관할 지자체의 의견청취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보고시 후 일반에 공람하여야 함

##### ● 실시계획 수립

(1)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

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판보 고시후 일반에게 공  
람하여야 함

(2) 실시계획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  
어야 하며,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의 결  
정,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정 등이 의제됨

### 카. 토지의 수용·사용(안 제32조)

(1) 시행자는 혁신도시지구 안에서 개발사업 시행  
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2) 혁신도시지구의 지정 및 세목고시가 있는 때  
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  
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내에 할 수 있음

### 타. 기반시설의 설치(안 제33조)

(1)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  
은 공급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2) 도로·상하수도 등 혁신도시의 원활한 기능발  
휘를 위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  
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파. 학교 및 교육과정,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안 제41조, 제42조)

(1)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의 개선을 위하여 혁신도시안에서 학교 또는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교육감의 지정을 받  
아야 하며

(2)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  
학교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3) 자율학교의 장은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교  
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 3. 혁신도시 개발방향(기본구상)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건  
설교통부는 혁신도시의 비전, 미래상, 규모 및 부문  
별 개발방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도, 이전기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4월 「혁신도시 기본구상  
(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이 기  
본구상(안)은 시·도별 특색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과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  
게 된다.

### 가. 개발목표 및 비전(미래상)

혁신도시 개발의 목표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  
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  
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는 산·학·연·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 및 혁신을 창출하는 거  
점도시,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첨단산업도시 및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 도시, 누구나  
살고싶은 친환경 전원도시, 공영형 혁신학교 설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 및 우수한 지역전통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교육·문화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  
하고 있다.

### 나. 목표인구 및 개발규모

혁신도시 목표인구는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  
여 2020년까지 2~5만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인구는 이전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기업, 대학 등의 종사자수와 부양가족, 그리고 타산업 고용 유발계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아울러 혁신도시 개발규모는 자족기능과 쾌적성을 추구하고 있는 국내 신도시 수준<sup>1)</sup>(1인당 부지면적(총면적/수용인구) 25~50평)을 감안할 때, 인구 2만의 경우 약 50~100만평, 인구 5만의 경우 약 150~250만평 규모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10개 혁신도시별로 여건이 상이하므로 이전기관의 특수성, 혁신클러스터 소요면적, 유보지 면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도시규모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혁신도시는 산·학·연구기관의 유치와 이들간의 상호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특히, 혁신도시별 기본구상 수립시 차별화된 유치 마케팅 전략 수립, 저렴한 토지공급대책, 산·학·연 네트워킹 지원대책 등 각종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특성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의 경우 생명·건강산업 등의 예처럼 혁신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 다. 부분별 개발방향

### (1) 혁신중심지구 및 주거지역 조성방향

혁신도시 중심지구는 혁신주체들간 상호교류와 지식창출 등 혁신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지역이다. 혁신주체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 창조적 생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중심 지구에는 이전기관·지식·기술산업 및 혁신지원기관,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이 집중되도록 배치하고, 광장, 중앙공원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휴식·교류의 장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지역특성을 살릴 랜드마크로 조성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지역은 24시간 연구·

개발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심지구 근거리에 배치(직주근접)하고, 개성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조성, 자연 친화적 주거환경, 각종 편의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지역에는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은 물론 여관·모텔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2) 교육 및 문화환경 조성

우수한 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교원 임용 및 공영형 혁신학교 등을 도입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특성과 발전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육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역사·문화적 유산보전, 향토문화와 결합된 문화집적지구 조성 및 공공도서관, 야외무대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일상적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 (3)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내의 경우 버스전용차선 설치 등 대중교통 지향적 교통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행자,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녹지축과 연계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망을 도시전역에 조성하고, 횡단보도, 정류장, 철도역 등에 경사로, 점자블럭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등 첨단정보 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21세기 첨단지능형 도시교통을 구현할 것이다.

### (4) 정보화 도시 및 안전한 도시조성

지식정보 시대에 걸맞도록 국내외 전세계 어느 곳과도 실시간(Real Time) 정보유통이 가능하도록 첨단도시 운영시스템과 생활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U-City(Ubiquitous City)를 조성할 계획이다.

1) 판교신도시(8만명, 282만평), 화성동탄(12만명, 273만평), 성남분당(39만명, 594만평), 수원이의동(6만명, 340만평)

아울러 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주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고려한 방법시설 및 서비스 확충, 건축설계시 시야선 확보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 (5) 친환경 전원도시 조성

쾌적하고 전원적인 생활여건을 갖춘 친환경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공원·녹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 등 녹지면적을 기존 신도시(판교 37%, 화성동탄 24.3%, 김포 23%, 파주교하 30.3%)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의 분산·연계배치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녹지체감율을 제고하고 도시내 소하천 등은 복개하지 않고 가능한한 보전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수변공간을 재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생태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연결로 확보 등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 (6)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조성 등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중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집·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중수도 등 수자원 절약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단지계획과 건축물의 배치와 설계시 바람길, 자연채광과 통풍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 4. 향후 추진계획

혁신도시별로 금년 6월까지 특색있는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후 사전환경성 및 광역교통체계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혁신도시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2007년 중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 등 선도기관은 2010년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수준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로서,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성장거점으로 시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별로 상이한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마다 개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구상단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등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도시계획분야의 저명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건설의 흐름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들어 시·도별 혁신도시 기본구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의 사옥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제 설계공모도 실시하도록 하여 주요 건축물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계획가(Master Planner:MP)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기본구상·개발계획·실시계획에서 건축단계까지 등 개발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전문가그룹을 일관되게 참여시켜서 계획 및 설계의 체계적 관리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은 물론 당초 계획의 충실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로 3~4명의 도시계획, 도시경제, 건축, 교통, 환경 등 주요 분야 전문가를 위촉·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각 시도별로 진행중인 혁신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포함한 기본구상은 미래 혁신도시의 모습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혁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새로운 차원의 접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국민의 지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 본다. ▲